

# 99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98. 11. 2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,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「'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안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①항의 규정에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함.

## 2. 주요골자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 및 '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된 "99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안"의 취득재산은 토지 취득 1건 2필지 5,775㎡로 미탄공도장 부지입니다.

## 3. 관계법규 및 지침

가.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

나.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

다.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

# 총괄표 (7 - 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금, 천원)

구분			합계			당초			공회(변경)분		
			건	수량	금액	건	수량	금액	건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5	38,270	278,034	4	31,698	259,141	1	5,775	14,111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특	1) 매입	토지	5	38,270	278,034	4	31,698	259,141	1	5,775	14,111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2) 교환취득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	1	739	84,246	1	739	84,246			
		건물	0	122.2	9,162	0	122.2	9,162			
		기타									
	1) 매각	토지	1	739	84,246	1	739	84,246			
		건물	0	122.2	9,162	0	122.2	9,162			
2) 교환매각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철거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대부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

# 취 득 재 산 목 록 ( 7 - 2 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 단 위 : m, 천 원 )

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추 정 가 격	취득 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	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
	지목	소 재 자	수량					
계		2 필지	5.775	14,111				
1- 1	전	창리 550	3,689	8,854	상반 기	미탄 공동장 부지	미탄창리 위상범	4. 가.
1- 2	전	창리 551	2,086	5,257	상반 기	미탄 공동장 부지	미탄창리 위상범	4. 가.

# 관 계 법 규 ( 발 취 )

## 지방재정법

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관리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제①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취득 권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.

##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② 법 제77조제③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.

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--- (시군의경우 1억원 이상) ---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2. 토지에 있어 ---취득의 경우(---1,000㎡ 이상) ---처분의 경우(1,000㎡ 이상)

## 공유재산관리조례

제7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-처분에 관한사항.
2.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.
3.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

## '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

### 4. 재산의 취득 기준

가. '99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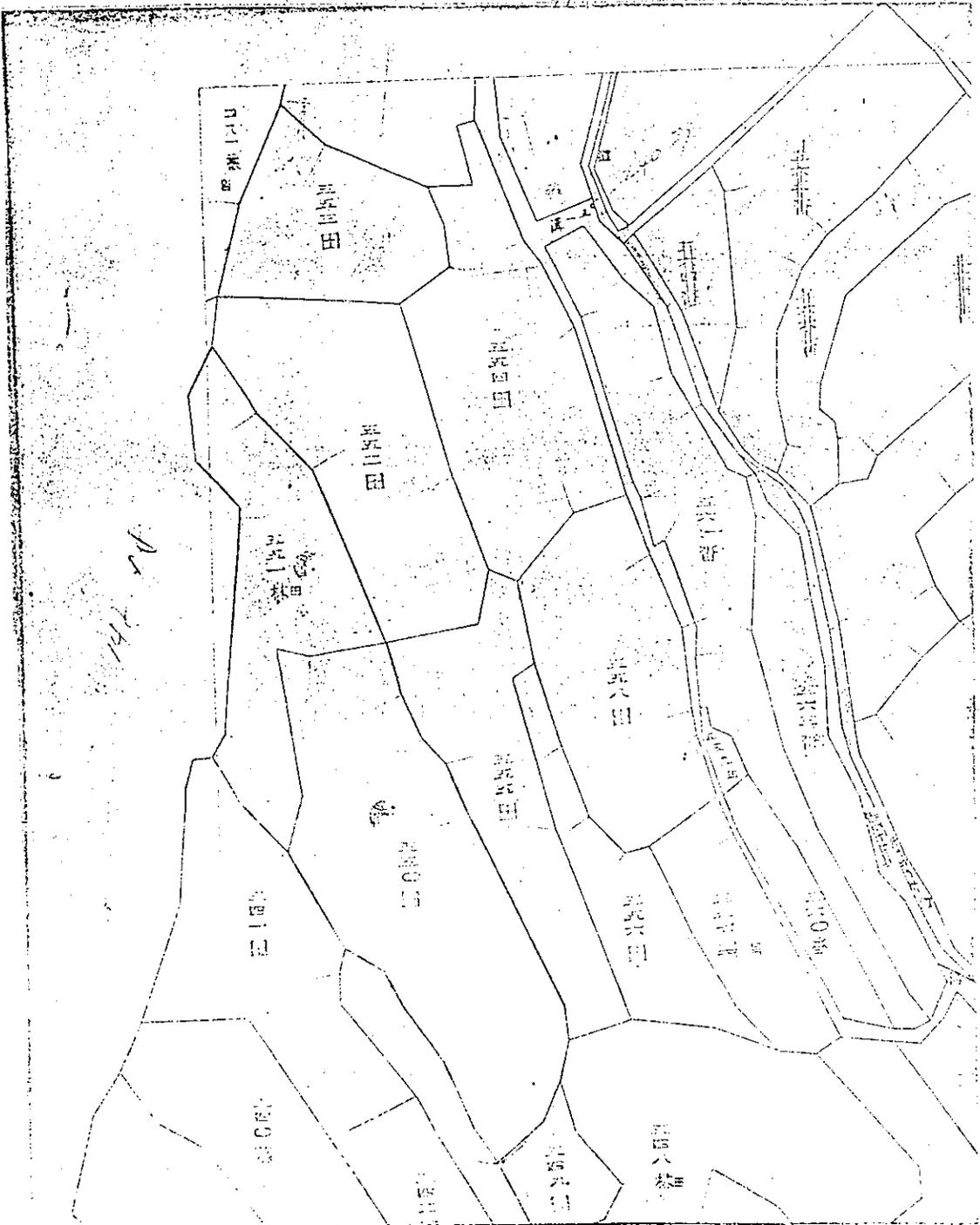
○ 매입, 기부채납, 신축, 증축, 양여취득, 교환, 무상귀속 등

나. 토지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취득 우선 취득한다.

-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치 필요한 토지
-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지
- 새로운 개발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
-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
-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

지적(임야)도 등본

강원도 평창군 대관읍 · 면상 리 550 단, 면적 축척 1:500 분지



지적(임야)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.

년 월 일  
평 차 구 수 (이)